

책임자

동향분석실
전용식 실장(3775-9035)

작성자

김규동 연구위원(3775-9049)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 6매

보험연구원-보험과 미래포럼,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 개최

-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보험과 미래포럼(공동대표 박찬대, 김성원, 장만영)이 공동 주최하는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가 9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됨
 -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음
 -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주제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은 보험산업의 환경을 바꾸고 위험보장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 보험업계도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들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장만영 보험과 미래포럼 공동대표는 제2주제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보험계약단계에 집중된 규제완화 및 보험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논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인슈어테크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보험산업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슈어테크로 인한 보험산업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보험업계와 정부 관계부처의 충분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고 일부 법령이나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 제1주제 :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 >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

인슈어테크와 블록체인

-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핀테크(Fintech)의 보험 버전을 의미함
 - 인슈어테크는 보험과 기술의 조화를 통해 보험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단순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보험산업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임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은 현재 보험 산업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구인 반면, 블록체인은 보험의 전통적인 작동 원리와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임
 - 즉,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처럼 단순히 보험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근본을 바꿔 놓을 수 있음
-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통제되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와 달리 동일한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임
 -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 신뢰성이 높으며,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음
 - 2세대 블록체인으로 일컬어지는 이더리움(Ethereum)의 경우 내재된 소프트웨어로 스마트계약 프로그래밍이 가능해 1세대 블록체인인 비트코인(Bitcoin)에 비해 활용도가 높음
 -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및 기업간 거래에서 효율성 증대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은 스마트계약, 위변조 방지, 본인 인증, 송금 및 지급결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보험, 금융, 법률, 세무, 부동산, 물류, 헬스케어, 공공서비스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용 가능함

블록체인과 보험산업

□ 최근 글로벌 (재)보험회사들은 재보험, 기업보험 및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처럼 보험사고의 규모가 크고 계약의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한 기업성 재물보험에서 블록체인의 적용 시도가 있었음

- 알리안츠 그룹의 자회사인 Allianz Risk Transfer(ART)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기술을 이용한 대재해스왑(Catastrophe Swap)*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IG는 Standard Chartered 은행의 복잡한 여러 국가의 위험보장을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보험계약을 개발 하였고, 보험산업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B3i(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을 적용한 재물 초과재보험** 계약의 베타버전을 발표하였음

* 대재해채권은 (재)보험회사들이 지진, 허리케인 등과 같은 재난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채권 형태로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복수의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게 됨. 대재해스왑이란 재난적 위험을 채권형태가 아닌 스왑 형태로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데, 대재해채권이 복수의 거래 상대방이 있는 반면, 대재해스왑은 단수의 거래 상대방이 존재함

** 초과재보험(Excess of loss reinsurance)이란 원수보험의 손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했을 때에만 보상해주는 재보험으로, 자기부담금 규모가 매우 큰 보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시도들은 보험회사간 복잡한 자본 흐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다국가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 및 리스크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개인계약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사례로는, 이더리움에 기반한 P2P(Peer-to-Peer)보험***을 개발 중인 미국의 P2P 보험회사 Dynamis가 있음

- P2P보험은 계약자들이 위험을 분담하기 때문에 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감소가 예상되는데, 지인들을 중심으로 P2P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인상해보험이나 재물보험처럼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간단한 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P2P보험은 보험계약자들끼리 위험을 보장하는 형태의 보험임. 전체 손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를 대비해 외부에 재보험을 가입하지만, 그 일정규모까지는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적립한 적립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따라서, 손해 실적이 양호하여 전체 손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을 경우, 계약시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 국내에서는 생명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보험산업에 적용하는 시도가 있으나,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임
 - 교보생명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음
 - 블록체인 적용 시 기대될 수 있는 효과로는,
 - 금융업종간 본인인증 시스템을 모두 연결한 블록체인망을 구축할 경우 본인인증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고,
 - 표준화된 보험상품 보험금 지급 공동망을 구축하면 보험금 중복 청구, 과다 진료 및 보험사기 관련 징후를 조기에 확인 가능하고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심사 차이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수 있으며,
 - 보험 계약정보 및 지급 자료의 관리를 블록체인화 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의 적용이 활성화될 경우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환경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이 대재해 채권과 같은 보험연계증권(Insurance Linked Securities; ILS)*에 적용되어 효율성이 향상되고 발행비용이 절감될 경우, 기존에 비해 보험연계증권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보험연계증권은 대재해채권처럼 위험을 자본시장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증권화한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대재해 위험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증권화가 가능함.
 - P2P 보험에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신뢰가 증가하여 네트워크의 규모도 더 커지고 대상이 되는 보험종목이 다양해질 수 있음
 - 보험연계증권 발행이나 P2P 보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서비스로 등장할 경우, 보험 서비스의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진입 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럴 경우, 보험회사들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IT 스타트업 회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보험산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보험산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언더라이팅, 보험료 산출 등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2주제 :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보험과 미래포럼 장만영 공동대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약관 등 교부 허용

- 현행 상법과 약관규제법상 **약관교부 내지 약관 사본의 교부의무는 종이에 작성된 약관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CD, 전자파일)에 의한 문서교부가 일반화되어 있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약관 교부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을 위하여 보험업법에 관련근거 신설할 필요가 있음

단계적 · 장기적 설명의무 완화

- 현행 보험업법 뿐 아니라 상법 및 약관규제법에서도 **대면거래를 상정하여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인터넷 거래와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는 설명의무를 구두로 이행하기 곤란
 -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의 경우 전자적 방식의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보험가입의 경우로서 **보장내용이 표준화 될 수 있거나 보험료수준이 낮은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다운로드 받아 청취 또는 시청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프로그램 설계 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

해피콜제도 개선 제언 등

- 계약체결 시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오프라인을 전제로 한 해피콜 제도를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 모집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온라인 보험판매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해피콜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점진적 수정**이 필요함

- 헬스케어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현행 보험업법령상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논하고, 의료분야에서의 치료 및 건강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